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10일, 한정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한정애의원)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발전소는 전환 또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감축 속도가 목표에 비해 더딘 상황임.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는 명확한 법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조기 폐지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는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일자리 상실, 주민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 소재 지역 및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발전소 폐지지역 및 인접지역 지정, 국무총리 또는 소관부처 소속의 위원회 신설, 중장기 지원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안정(고용보조금, 전직 지원, 고용승계 등) 및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국고보조금 인상, 조세 감면, 별도 기금 조성 등)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지역과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신설 및 특구 지정 규정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승계 의무화나 특정 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의 목적 외 활용,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이 타 산업위기 지역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타 산업과의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제정안들의 지원 요건과 특례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단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